

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		
보도 일시	2022. 12. 9.(금) 11:00	배포 일시	2022. 12. 9.(금) 9:00
담당 부서	세제실 신국세조세규범과	책임자	과 장 김태정 (044-215-4250)
		담당자	주무관 민다연 (gfxm140@korea.kr)

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

□ G20/OECD 포괄적 이행체계(IF)*는 '22.12.8일 필라1 Amount B**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였으며, '23.1.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

* 포괄적 이행체계(Inclusive Framework) : BEPS(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)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(現 141개국 참여)로서 필라1·2 논의를 주도

** 필라1은 ① **Amount A**(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) 및 ② **Amount B**(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·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¹⁾ 표준화)로 구성되며, 동 보고서는 **Amount B 관련**
1) 이전가격: 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

○ 「필라1 Amount B」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하여 **과세당국·기업의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음

-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,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, 금번 공개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음

- 다만 동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립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'23년 중순까지 최종안 마련 및 '24년 시행*을 목표

* Amount A와의 동시 시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행일정을 1년 연기('23년→'24년 시행)

○ 금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*이며,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·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

* OECD는 '22년 2월 이후 Amount A 각 제도요소들에 대한 서면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음

※ 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

-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
↳ 첨부파일 혹은 OECD 웹사이트 확인(동 보도자료 3페이지 상단 링크 참고)
- ② 의견작성(Word 포맷)
- ③ 이메일 제출 (수신처 : TransferPricing@oecd.org)

□ 필라1 Amount B 공개안 주요내용 (⇒ 본 보도자료 3페이지 <참고>)

○ (개요)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·유통활동(기본 M&D 활동)*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·단순화하여 대체하는 작업

* 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 (BMDA)

○ (적용대상)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*

*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

○ (가격산정) 산업·지역 등 기업의 이익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 도출

○ (이행방안)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방식에 따라 도입

* 다만, 모든 국가에의 의무적용 또는 각국 자율도입 등 강제화 여부는 논의중

○ (조세확실성) Amount 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-과세당국 간 사전승인 제도 혹은 국가 간 상호합의 등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을 통하여 해결

<참고> 필라1 Amount B 공개안 주요내용

참고 필라1 Amount B 공개안 주요내용

※ 전체 내용은 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(https://www.oecd.org/tax/beps/public-consultation-document-pillar-one-amount-b-2022.pdf)

※ 동 보고서는 Amount B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,
 향후 의견 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1 개요

-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마케팅·유통활동(기본 M&D 활동)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·단순화하는 작업
- 이전가격 분쟁을 다수 야기하는 기업의 판매활동에 대하여 효율적인 분쟁예방·해결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

< 필라1 Amount A와 Amount B 비교 >

	Amount A	Amount B
목적	매출발생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규칙 마련	기본 마케팅·유통활동 관련 새로운 표준화된 이전가격 체계 도입
적용대상	일정 매출액(200억 유로) 및 세전 이익률(10%)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	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재판매기업 등 * 업종, 매출액 등 요건은 없으나, 특정 거래조건을 충족할 필요
구현방식	다자간 협정	OECD 이전가격 지침(아직 논의중)

2 적용 대상

- ①유형상품(농산물 등 원재료 및 무형상품은 제외) 도매업을 영위하며 ②사업 관련 위험(신용위험 등)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③현지 재판매업자*
- *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(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내부거래가 대상)

- ① 기본 M&D 활동 이외에 R&D·제조 등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
- ② 기업의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할 것
- ③ 수행기능 등 경제적 특성이 재판매업자와 유사한 위탁판매업자·판매대리인도 적용대상에 포함(다만, 특수관계기업의 상품 도매 유통활동에 공헌하는 경우로 한정)

- 아울러,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기반으로 양적·질적 기준 평가*를 통해 기본 M&D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
- * 현재 G20/OECD IF에서 고려중인 양적·질적 기준 예시
 - ▶ (기능) 소매업 등 부수적 활동의 비율이 총매출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
 - ▶ (자산) 상표권 등 주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것
 - ▶ (위험) 시장위험 등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할 것
 - ▶ (과세당국과의 합의) 양자·다자간 사전승인제도(APA) 대상인 경우 Amount B 적용대상에서 제외

3 가격산정 방법론

- (1단계) 기본 M&D 활동을 수행하는 전체 기업들을 식별 → (2단계) 산업·지역간 차이 등을 반영해 비교대상기업들을 선정 → (3단계) 동 기업들의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* 도출
- * 기업은 동 범위내에서 특정값(예: 중위값, 평균값, 사분위값)을 Amount B 가격으로 적용
- 기업의 경제적 특성(영업자산 등)을 고려하고 이익변인(산업·지역 등)의 영향을 정량화하여 정상가격 산정

- 수익률 기준과 관련하여 이전가격세제 상 여러 가지 정상가격산출 방법 중 **거래순이익률법***을 적용
 - *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(원가, 매출액 등 기준)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, 현재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됨
 - 다만 ①**적합한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하거나** ②**거래순이익률법이 아닌 비교가능제3자가격 방법*** 등 **他 이전가격 방법**이 더 **적절한 경우 적용제외**
 - *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
 - 아울러, 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**비교가능성 조정***(comparability adjustment) 가능
 - * 검토대상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존재하는 중대한 차이(예: 국가신용도의 영향 제거)

4 이행 방안

-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**기존 이전가격 세제 시행방식**에 따라 도입
 - **(경과규정) Amount B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이** 유통구조 조정 등을 통해 **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인정**
 - 다만, 적용대상인 기업이 이를 **회피하기 위하여** 구조조정 등을 통해 **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**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**Amount B 적용 가능**
 - * 기업이 Amount B를 악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
 - **(정보제출 의무) Amount B 집행**을 위하여 기업은 **개별기업보고서** (로컬파일)* **내용의 일부로서 관련 정보****를 과세당국에 제출
 - * 개별기업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, 가격산출 정보 등을 담은 이전가격 관련 서류로,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내 제출의무
 - ** 고객 유형별 거래내역 및 관련 기업 기능분석, Amount B 가격산출 방법 설명, 납세자 재무정보, 사업구조조정 등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설명자료 등

5 조세확실성

- Amount B 관련 분쟁을 **사전승인제도***, **상호합의**** 등 기존 **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**을 통하여 해결
 - *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정기간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, 범위 등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
 - **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 문제 등에 대하여 양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세조약상 분쟁해결 절차
- **(분쟁예방)** 납세자는 이중과세 발생 이전에 관할 과세당국 등에 **사전승인제도, 상호합의 등 절차를 신청하여 Amount B 분쟁을 사전에 예방**
 - **(분쟁해결)** 납세자는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**상호합의를 통한 조정**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양 과세당국 간 합의 실패시 **조세조약 상 중재(arbitration)*** 절차 신청 가능
 - * 양 과세당국이 일정기간 내 상호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미해결 쟁점을 회부하여 강제적·의무적 결론을 내리는 조세조약상 절차(상호합의의 연장)